

의안번호	2201910
의 퇴 인	강훈식 의원
회 답 일	2024.6.4.
추 계 번호	24B0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36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4	안 제50조(근로시간), 안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¹⁾,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주 최대 52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과 연동하여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8시간), 특정 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된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 중 하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³⁾

1)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3.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도 단축됨
 - 개정안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1주 최대 48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4시간)으로 단축됨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래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지출의 증가와 감소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감소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어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재정지출이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휴일이 증가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수 있음
 - － 이 경우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장래에 발생할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사 합의 결과·경제성장률·해당 사업체의 경영실적 및 근로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며,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은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출산율·재해율 등 행태변화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
 - － 참고로, 2018년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의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주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